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않됨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상급침실 이용료

가.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

* 예) 일반실 이용 비용이 월 150만원(수가+ 기타 비급여 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 비용이 월 170만원인 경우 그 차액(20만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함

나.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함

*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함

3)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table>
<tr><th>비급여항목</th><th colspan="2">비급여 내역</th><th>비고</th></tr>
<tr><td>식재료비</td><td>1식 2,500원</td><td rowspan="2">1일 9,000원</td><td rowspan="2">9,000(1일식,간식대) x 30일= 270,000원
1일3식·30일기준 270,000원</td></tr>
<tr><td>간식비</td><td>1식 1,500원</td></tr>
<tr><td>이·미용비</td><td>무료</td><td></td><td>외부시설이용 경우 본인부담</td></tr>
<tr><td>상급침실비</td><td></td><td></td><td>규정에 입각한 비용부담</td></tr>
<tr><td>병원진료 및 처방약</td><td colspan="3">진료비 및 처방약 청구액</td></tr>
</table>